

『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7월 8일

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구미보건소장 구 건 회

나. 제안이유

- 출생신고 시 정부3.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의제공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
-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시책 반영 및 다자녀 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을 위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 추가(안 제6조, 안 별지 제1호의2서식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건강가정기본법」
- 「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사회복지과와 합의됨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,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(2016.3.10), 「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8조의 개정사항에 따라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별지 서식 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”를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